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96
----------	------

2014년 3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7일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4년 2월 2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영한)

가. 제안 이유

- 지방소득세 세율과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율 변경 등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시행) 내용을 조례에 반
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상속 등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 개정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함(안 제5조).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그 세율(소득·법인세액의 10%)을 현행부담 수준과 같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변경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동함(안 제14조 ~ 제15조).
- 대형마트, 복합영화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정세율의 변경에 따라 적용세율을 법정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1. 2 ~ 1. 22)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상속 등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 개정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안 제5조)

- 상속 등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기한을 현행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맞추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현행)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 (개정)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취득세(상속)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같은 과세사유인 상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상속세 및 취득세(상속)의 신고기간이 서로 달라 납세자의 혼란과 체납발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기산일을 상속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요트회원권¹⁾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내용, 사회적 인식이 종전 과세대상인 타 회원권(골프, 승마 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에 추가한 「지방세법」 개정사항(2014. 1. 1 시행)을 반영하여 조례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개정안 제5조제1항제12호)임.

〈회원권 구분〉

구분	적용법규	이용시설	자격	가격요소	세율	최초과세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법)	골프장	회원	보증금 입회비	20/1,000	1991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			1995
승마회원권		승마장	회원			2006
콘도미니엄 회원권	관광진흥법	콘도미니엄	회원			1991
요트회원권	체육법	요트	회원			2014

- 요트회원권의 납세지는 요트보관소의 소재지(지방세법 제8조)로 서울시에는 현재 과세대상은 없으나 소득증가로 인한 레저산업의 발달 등 향후 예상되는 요트회원권 수요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영등포구 여의도동 81-8 소재 “서울 마리나 요트&클럽”으로 요트장이 등록되어 34척이 운영되고 있으나, 요트체험 및 교육, 단순 계류지 등의 장소로 이용될 뿐, 회원권을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되는 요트장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안됨.

1) 요트(Yacht) : 배안에 세워진 돛대(마스트)와 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종하면서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레저 선박으로 동력엔진에 의해 운행하는 보트와 구분

※ 요트장업 : 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변경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²⁾ 하는 지방세법 개정³⁾에 따라 현행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세로 과세하는 지방소득세(소득분)를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세 율	<제7장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 <제7장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에 대한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갖게 하여 과세자주권이 확보되고 법인세율 또는 소득세율의 변화와 같은 국세 조세정책 변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세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독립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주체가 각기 고유의 의사에 따라 조세 및 세율을 선택하고 독자적으로 독립된 세원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여 과징되는 조세

부가세 : 국가 또는 상위단체가 과징하는 이른바 본세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위단체가 과세

「지방세법」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3억원 초과	90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또한 법 개정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나, 법인세분의 세액공제·감면은 과세체계상 과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약 9천억원, 우리 시의 경우 약 3천억원의 세수증가가 추산됨.

※ 산출근거 : '12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분(9조)×지방세분(10%)×서울시 점유율(30%)

※ 서울시 지방소득세 규모: 3조 5,262억원('11) → 3조 8,191억원('12) → 4조 1,983억원('13 추계)

- 법에 따라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법 부칙에서 조례에 의한 세율의 효력 발생일을 201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세수영향과 납세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탄력세율의 가감 적용은 효력발생시점과 연계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 또한 국가 조세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세수 신장 과세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과세자주권을 확보한다는 법 개정취지와 함께 납세자의 세부담 및 서울시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소득자료 및 공제·감면관리 등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 전문성 강화 등의 조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행정부에서는 전산시스템 등 납부인프라 구축 및 과세자료 관리, 민원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등 세무업무 증가 등으로 총액인건비 변경을 통해 서울시 142명(본청 10명, 자치구별 3~4명) 인력 충원 통보한 바 있음.

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세목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된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현행 조례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제7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을 제6장 주민세 제3절을 신설·이관하여 조문을 법 조문체계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세법 개정 및 조례 개정안 내용)

지방세법 개정내용 (2014.1.1.)		서울특별시시세조례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현행	개정(안)
<p>제7장 주민세</p> <p>제1절 통칙</p> <p>제2절 균등분</p> <p>제3절 재산분</p> <p>제8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통칙</p> <p>제2절 소득분</p> <p>제3절 종업원분</p>	<p>제7장 주민세</p> <p>제1절 통칙 (현행과 같음)</p> <p>제2절 균등분 (현행과 같음)</p> <p>제3절 재산분 (현행과 같음)</p> <p>제4절 종업원분</p> <p>제8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통칙 (현행과 같음)</p> <p>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회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p> <p>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p> <p>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p> <p>제11절 보칙</p>	<p>제6장 주민세</p> <p>제1절 균등분 (현행과 같음)</p> <p>제11조(세율)</p> <p>제2절 재산분 (현행과 같음)</p> <p>제12조(세율)</p> <p>제13조(신고의무)</p> <p>제3절 종업원분 (조문 신설, 내용보충 포함)</p> <p>제14조(세율)</p> <p>제15조(신고의무)</p> <p>제7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개인지방소득세</p> <p>제16조(세율)</p> <p>제2절 법인지방소득세</p> <p>제18조(외국세율)</p>	<p>제6장 주민세</p> <p>제1절 균등분 (현행과 같음)</p> <p>제11조(세율)</p> <p>제2절 재산분 (현행과 같음)</p> <p>제12조(세율)</p> <p>제13조(신고의무)</p> <p>제3절 종업원분 (조문 신설, 내용보충 포함)</p> <p>제14조(세율)</p> <p>제15조(신고의무)</p> <p>제7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소득분</p> <p>제14조(세율)</p> <p>제2절 종업원</p> <p>제15조(세율)</p> <p>제16조(신고의무)</p>

- 본 세목은 2010년 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였으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볼 때 종업원 급여는 소득이 아닌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업원 급여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짐.

〈도입 현황〉



※ 종업원은 업무과정에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민세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라.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증과세율 변경(안 제34조)

- 개정 지방세법에서 소방 관련 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화재위험건축물 증과세 대상 세분화하여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³⁾에 대한 증과세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개정하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규정 정비 〉

조례 조항	현 행	개 정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소, 백화점, 극장,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u>2배 증과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유소, 극장,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 : <u>2배 증과세</u>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u>3배 증과세</u>

3)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고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

※ 현행 「화재위험 건축물」과 신설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 비교

구 분	화재위험 건축물(2배 중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3배 중과 신설)
극장	극장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판매시설	도매·소매시장, 상점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숙박시설	숙박시설(여인숙 제외)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공장 및 창고	공장, 영업용 창고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이상
건물	4층 이상 건물	11층 이상 건물

- 건물 고층화와 화재원인의 다양화 추세 및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과세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하는 장소가 많아,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적절한 자원확보 필요성 등에 의한 지방세법 개정예에 맞추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개정시 연간 약 505억원의 추가적인 세수 증가가 전망됨.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강화에 따른 세수추계액〉

(단위: 억원)

구 분	현행 세액	세액	증 가	
			금 액	비 율
전 국	3,102	5,133	2,031	65.5%
수도권	1,676	2,764	1,088	64.9%
지 방	1,426	2,369	943	66.1%
서 울	744	1,249	505	67.9%

※ 출처 : 안전행정부 지방세법 개정계획(2013. 7.)

- 다만,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고, 고층건축물 등의 화재 대비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세수 증가분의 기금 적립 등 대형화재에 대비한 소방장비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개시일”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실종선고일”을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장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연간 이용일수

제6장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

제14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5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7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

제16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제16조의2(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장 제6절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1항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항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2항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신고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u>상속개시일</u>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u>실종선고일</u>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제4조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1.~11. (생략)</p> <p><u>12.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 승마장,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 기간, 연간 이용일수</u></p> <p>13.~14.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5조(신고납부) ① -----</p> <p>-----</p> <p>---- <u>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u></p> <p>-----<u>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11. (현행과 같음)</p> <p><u>12.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장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연간 이용일수</u></p> <p>13.~14.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제6장 주민세</p> <p><u><신 설> 제3절 종업원분</u></p> <p><u><신 설> 제14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u></p> <p><u><신 설> 제15조(신고의무)</u></p> <p><u>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u></p>

현행	개정안						
<p>제7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소득분</p> <p>제14조(세율)</p> <table border="1" data-bbox="165 985 772 1182">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소득세분</td> <td>소득세액의 100분의10</td> </tr> <tr> <td>법인세분</td> <td>법인세액의 100분의10</td> </tr> </tbody> </table> <p>제2절 종업원분</p> <p>제15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10	<p>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p>제7장 지방소득세</p> <p>제1절 개인지방소득세</p> <p>제16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제2절 법인지방소득세</p> <p>제16조의2(세율)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p> <p>〈삭제〉</p> <p>〈삭제〉</p>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10						

현행	개정안
<p><u>제16조(신고의무)</u></p> <p>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p>제9장 지역자원시설세</p> <p>제6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p> <p>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생략)</p> <p>② <u>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 138조로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삭제〉</u></p> <p>제9장 지역자원시설세</p> <p>제6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p> <p>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1항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u></p> <p>③ <u>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항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38조제2항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u></p>